

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12. 2. 16 규칙 제 668호
일부개정 2014. 3. 10 규칙 제 726호
일부개정 2014. 10. 8 규칙 제 769호
일부개정 2021. 12. 20 규칙 제1060호(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칙
일괄개정 규칙)
일부개정 2025. 8. 6 규칙 제1171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4. 3. 10, 2021. 12. 20>

제2조(명칭과 위치) 용인시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.

제3조(위탁운영) ①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「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 후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3. 10, 2021. 12. 20>

② 제1항에 따른 공고방법은 용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며, 신청서 접수는 주무부서에 직접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한다.

제4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심의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2의 목록을 따른다. 단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3. 10>

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 및 배점은 별표 3과 같다.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제4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. 다만,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3. 10, 2021. 12. 20>

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 신청기관이 1개 이하인 경우 1회에 한정하여

재공고 하며, 재공고 후 1개 기관 신청 시 제1항에 따라 평균60점 이상을 받으면 위탁기관으로 선정한다. <개정 2014. 3. 10>

③ 제2항에 따른 재공고 후 수탁 신청기관이 없을 경우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하여금 위탁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위탁평가 기준)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후원금 등 재정부담 실적
2. 홍보 등 지역사회 기여도
3. 시설물관리, 종사자 등 인력관리의 효율성
4. 지역사회 내 인적·물적 자원동원 및 활용 실태
5. 위탁사무, 기본사업 등 사업추진 실적
6.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이용자 편의 개선 노력 등

제7조(계약의 체결)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1개월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내용에 위탁의 목적, 위탁재산, 위탁기간, 위탁사업,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, 시설의 안전관리, 고용승계, 계약의 해지,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.

제8조(고용승계)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기관이 변경되어도 종전 직원들의 신분은 보장한다.

제9조(사업계획서) ① 수탁기관은 다음 연도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말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세입·세출 예산서
2.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
3. 그 밖에 용인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를 위한 제반 사업에 관한 사항

제10조(사업결산서)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말 기준 시설 운영의 결과에 대한 사업 결산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기간 이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1조(운영규정) 조례 제18조에 따른 자체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20>

1. 사회복지시설 운영방침
2.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3. 종사자에 대한 직무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
4. 조직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
5. 재무·회계에 관한 사항
6. 프로그램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폐지)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「용인시장장애인주간(단기)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」은 이를 폐지한다.

부칙 <2014. 3. 10 규칙 제726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 10. 8 규칙 제769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12. 20 규칙 제1060호,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5. 8. 6 규칙 제1171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25. 8. 6>

용인시 사회복지시설

시설구분	명 칭	위 치	주 요 기 능
장애인복지관	용인시처인 장애인복지관	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318 (고림동 954-1)	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 심리·교육·직업·의료·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재활에 필요한 합리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,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
	용인시기흥 장애인복지관	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69번길 94 (보정동 1097-8)	
	용인시수지 장애인복지관	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(풍덕천동 720)	
장애인 보호작업장	용인시 보호작업장	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316 (고림동 954)	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 능력향상, 직무기능 향상훈련 과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
장애인주간 이용시설	용인시장애인 주간이용센터 라온	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한터로 341-23 (주북리 700-1)	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	용인시동백 장애인주간이용센터	용인시 기흥구 중동 866번지	
	용인시보정 장애인주간이용센터	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64-2번지	
노인복지관	용인시처인 노인복지관	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문화행정타운 내 (삼가동 556)	노인에 대한 취미·여가·건강 관리, 경로당 활성화 등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
	용인시기흥 노인복지관	용인시 기흥구 새천년로16번길 (신갈동 720)	
	용인시수지 노인복지관	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(풍덕천동 720)	
	용인시동백 노인복지관	용인시 기흥구 중동 866번지	
	용인시보정 노인복지관	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64-2번지	
노인일자리 지원기관	용인시 시니어클럽	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24번길11-16 (김량장동 353-15)	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 개발·지원, 창업·육성, 안전관리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·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
장애인재활 치료시설	용인시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	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08번길5-14 (김량장동 351-21)	성장기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인지, 의사소통, 감각·운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

[별표 2] <개정 2014. 10. 8>

위탁 심의자료의 구성

구 성	내 용
1. 위탁신청 법인에 관한 일반적 사항	1) 법인 유형 및 소재지 2) 법인 정관 3) 법인대표 및 이사 전원의 인적사항과 이력서 4) 관련 사회복지사업 수행 실적
2. 위탁신청의 배경과 목적	1) 위탁신청의 배경 및 취지 2) 위탁 운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
3. 시설운영 계획	1) 조직구성 (1) 시설장 채용조건(경력 등) (2) 종사자 확보계획 (3)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2) 사업계획 (1)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장·단기 계획 (2)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방안 3) 시설운영 (1)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(2)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(3) 재정운영 및 투자 계획 (4) 재정 확충 방안
4.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	1) 지역사회에서의 공신력 제고 방안 2)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방안 3) 지역사회 자원동원 및 활용 방안

[별표 3] <개정 2014. 10. 8>

수탁자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

심사기준	심사항목	배점
총 점		100점
1. 수탁자의 적격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- 법인의 보유자산(부동산, 동산 구분) - 법인대표 및 이사회적 적합성 - 해당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운영실적 	30점
2.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전문성 -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전문성 -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-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방안 - 최근 법인 재무제표 -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- 재정 확충 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 - 시설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 	50점
3.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고 방안 -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- 지역사회 자원동원 방안 	10점
4. 시설운영능력 종합 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질문에 대한 성실성, 수행의지, 수행 능력, 가치관, 현실성 등 설명 청취 후 판단 	10점

※ 시설 유형 등 위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